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이승로 의원 외 11명
- 나. 의안번호 : 제2219호
- 다. 발의일자 : 2017. 11. 3
- 라. 회부일자 : 2017. 11. 6

2. 제 안 사 유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정의에 “인공조명,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 정의에 “인공조명”, 환경오염의 정의에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 나. 상위법 제명 변경 반영함(안 제16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동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정의에 “인공조명,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 최근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빛공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16.1.27)을 통해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한 바 있음.

현행 조례 제4조에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을 준용하여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지만,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이 누락되어 있고 환경오염의 범위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누락되어 있어 있는 바, 안 제4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16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제16조의2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제명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15.12.22)¹⁾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를 정비(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하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음.

- 다만, 상위법 개정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바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해당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1) 시행 '16.12.23